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혁신·상생하는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교육 정책 방향 심의·평가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소비자교육 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경제교육 위탁 업무의 집행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관계 행정기관 범위에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추가(안 제6조제5호 및 제7호 신설)
- 나. 경제교육 위탁범위에 ‘경제교육포털의 관리·운영’과 ‘경제이해력 및 경제교육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연구·조사’ 업무를 명시(안 제8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
- 다. 경제교육 업무 수탁 기관에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또는 경제교육 분야 전문성 및 인적·물적 능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추가(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3. 11. 21. ~ '24. 1. 2.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

7. 공정거래위원회

제8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포털의 관리·운영

5.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제이해력 및 경제교육 실태파악 등을 위한
연구·조사

제8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조의2에 따라 설립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5. 경제교육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적·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
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u><신설></u>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중소벤처기업부</u>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u>공정거래위원회</u>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제8조(업무의 위탁)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포털의 관리·운영</u> 5. <u>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제 이해력 및 경제교육 실태과악 등을 위한 연구·조사</u>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9조의2에 따라 설립된 경제교육단체협의회</u>

<u><신 설></u> ③ (생 략)	5. <u>경제교육 분야에 전문성이</u> <u>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적·</u> <u>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u> <u>되는 기관·단체 중 기획재정부</u> <u>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u> <u>또는 단체</u> ③ (현행과 같음)
--	--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 〉

연 락 처	(044) 215 - 2551